

「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(안 제3조)
- 다. 토론회 등의 개최 (안 제4조)
 -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 개최
 - 의원 2명 이상이 지정토론자로 참여
- 라. 계획 수립 및 관리 (안 제5조)
 -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 포함한 연간계획 수립
 - 회의록 작성 관리
- 마.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(안 제7조)
 - 제시된 의견은 안건상정,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에 반영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

를 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- 안 제2조에서는 “현안사항” 및 “토론회 등”의 용어 정의
 -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
 - 안 제4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
 -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연간계획 수립
 - 안 제7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결과반영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[관련법률]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